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9.07.14 (화) 14:00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권광택 의원 외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09년 7월 8일

3. 제안 이유

-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농업 관련 환경보전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의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교류와 홍보 내용(안 제8조, 안 제10조)
-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과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농업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
-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유공자의 시상 근거 규정 명시(안 제14조, 안 제15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이 커다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의 선호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